Yeosu
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04시 04분

목차

목차 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식품위생과 3
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서 3

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서

2013.05.20 10:25 조회수 2677 등록자 관리자

민원사무명	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서
민원내용	
관계법령	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
구비서류	1. 교육이수증(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「먹는물관리법」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·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건강진단결과서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처리부서	식품위생과
협의부서	
접수	
수수료	2만8천원
처리기간	
기타사항	
흐름도	신고서 작성 (신청인) ▸ 접수 (처리기관) ▸ 서류검토 (처리기관) ▸ 결재 (처리기관)[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] ▸ 신고증 발급
기타참고사항	1. '위탁급식(위탁한 경우만 해당)'란은 '운영형태'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. 2.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3.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 · 운영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), 기관의 명칭,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 4.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5.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,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.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[별지 제68호서식]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서.hwp (1532 hit/ 23.0 KB)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다음글
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